

의안번호	제464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0년 6월 29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6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0년 6월 29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 정비를 통해 재해 발생 시 민간사업자의 하천점용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.

※ 관련근거 : 「하천법」 제37조(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)

2. 주요내용

- 하천점용료 중 재해 발생 시 감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 - 재해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시 → 도지사가 정하는 비율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재해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: 도지사가 정하는 비율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점용료 등의 감면) (생 략)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<u>4. (신 설)</u></p>	<p>제4조(점용료 등의 감면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재해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정 으로 본래의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도지 사가 인정하는 경우 : 도지사가 정하는 비율</u>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하천법

제2조(정의)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4. "하천관리청"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·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국토교통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를 말한다.

제37조(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)

-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, 그 밖의 하천 사용료(이하 "점용료등"이라 한다)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사유(私有)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·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·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·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·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.
-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.
 1. 공용·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
 2.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
 3.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
제50조(하천수의 사용허가 등)

- ① 생활·공업·농업·환경개선·발전·주운(舟運)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.
 1.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 2.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·군관리계획,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3.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 4.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- ⑤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⑥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「지하수법」 제7조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⑦ 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.
- ⑧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.
-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□ 하천법 시행령

제44조(점용료등의 감면)

- ①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"공용·공공용,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1.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
 2.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(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
 3.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·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
 4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
 5.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경우
 6.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
- ②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전기공급시설·전기통신시설·송유관·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.
- ③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.
 1.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전액 면제
 2.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2분의 1 감면
 3.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: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

제58조(하천수사용료의 감면)

- ① 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천수사용료를 면제한다.
 1. 하천관리청이 제56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소관 하천의 유지·보수 등 하천관리를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
 2. 하천수 사용자가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내는 경우
 3. 하천수 사용자가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수 사용료를 내는 경우